

이길도 의원 구정질문 자료

● **도표1 [장기성 예금을 중도해지하여 발생한 이자 손실액]** - 서구청 예산과 제공
(단위 : 원)

종 류	예치일	만기일 (예치기간)	해지일	만기이자 (A)	해지이자 (B)	손실이자 (A B)	비고
RP (신종환매채)	95. 11.1	96. 1. 3 (63일)	95.12.26	18,123,287	9,041,095	9,082,192	
CD (양도성예금)	95. 11.6	96. 2. 5 (91일)	96. 1.13	26,881,796	19,430,180	7,451,616	
"	95. 11.9	96. 2. 8 (91일)	96. 1.13	26,881,179	18,466,195	8,415,601	
총 계				71,886,879	46,937,470	24,949,409	

● **도표2 [94~97 월별 이자수입 현황]** - 서구청 예산과 제공 -

(단위 : 원)

구분	계	94년도	95년도	96년도	97년도	비고
계	3,389,697,926	791,369,480	690,996,792	1,023,760,922	883,570,732	
1월	193,736,135	7,961,650	33,258,926	103,539,158	48,975,401	
2월	353,676,127	9,703,190	53,986,553	179,590,230	110,396,154	
3월	165,773,388	2,309,434	3,078,055	72,488,737	87,897,162	
4월	208,987,560	0	75,499,983	41,602,427	91,885,150	
5월	543,946,338	279,128,936	73,662,083	115,752,949	75,402,370	
6월	380,465,062	55,418,937	69,899,525	75,430,255	179,716,345	
7월	223,498,722	30,888,620	72,292,345	52,911,662	67,406,095	
8월	316,247,775	93,939,700	54,230,582	99,636,798	68,440,695	
9월	263,926,745	15,821,913	54,449,762	40,203,710	153,451,360	
10월	317,041,737	156,751,101	78,245,468	82,045,168		
11월	180,834,561	66,468,935	32,166,843	82,198,783		
12월	241,564,776	72,977,064	90,226,667	78,361,045		

◎도표3 [광주지역 주요 추진사업 지원 내역서] - 광주은행 농성지점 제공

(단위:천원)

지 원 내 역	지원금액	관 련 기 관	비 고
광주·전남발전연구기금	700,000	광주전남발전연구원	
광주비엔날레 후원금	951,000	문예진흥재단	
과학기술연구원 기금	300,000	광주과학기술원	
기본재산출연	1,000,000	광주신용보증조합	
광주시 전산시설 기증	455,000	광주광역시청	
광주시체육회 기부금	117,000	광주시체육회	
주부대학 및 노인대학운영	337,000		
장학기금 출연	1,000,000	광은장학회	
지역경제조사지 발간	575,000	광은경영경제연구소	
5·18재단기금	510,000	(재)5·18재단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000	광주광역시, MBC등	
소년·소녀가장 돕기	60,000	광주광역시	
지역밀착 경제조사	560,000	광주광역시	
중소기업 지원센터	300,000	광주광역시	
KISC 출자	378,000	광주광역시	
합 계	7,343,000		

◎도표4 공유(구)재산 수입료 수입내역

(단위:m²)

동번	재 산 의 표 시			대 부 료	사 용 자		비 고
	지번	물건명	사용면적		주소	성명	
농성	299	구내식당	148	5,680,000	생 략		
농성	299	은행	20	1,377,180			
농성	299	여행사	10.8	7,000,000			
농성	299	대지	0.6	40,360			
농성	299	대지	18	1,252,050			
양동	96-4	건물	347.64	500,000		양2동 청사	
양동	96-4	건물	347.64	3,000,000		양2동 청사	
양동	96-4	건물	347.64	1,500,000		양2동 청사	

광주광역시서구구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선정의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금관리의 투명성과 자금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금고의 선정) 1. 금고의 선정은 공개입찰방식에 의한다.
2. 금고의 계약기간은 3년 이하로 한다.
3. 금고는 필요에 따라 회계별로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4. 자금의 성격에 따라 복수로 계약할 수 있다.

제3조(금고선정의 기준) 구청장이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때는 금고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대내외적인 신용도
2. 주요 금융상품별 운용수익률
3. 광주 서구 및 지역사회 기여도
4. 자산운용의 건전성등 재정상태
5. 금고관리업무에 대한 경험 및 전산능력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금고선정위원회에서 한다.

제4조(여유자금 운용원칙) 서구청장은 여유자금운용시 안정된 금융상품에 운용하여야 하며 수익률 예측이 곤란한 금융상품에 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금고선정위원회 구성) 1. 금고선정을 위하여 9인의 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구금고 계약만료 5개월전까지 구성하고 새로운 금고계약이 체결되면 해산한다.
3. 위원회는 서구청장 1인, 구의 총무국장 1인, 행정학, 경영학 전공교수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전문가 5인, 서구의원 2인.
4. 위원회의 위원중 2명은 서구의회의 위촉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며 전문가 5인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5. 금고선정위원회의 장은 구청장이 한다.
6. 위원회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금고선정의 공표) 1. 구금고를 선정한 경우에 구청장은 그 사실 및 선정의 기초가 된 근거의 개요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공표하여야 한다.
2. 입찰에 참여한 자, 지역주민 혹은 의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구청장은 그 상세한 자료를 복사해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자금운용사항 보고) 1. 구금고는 예치된 자금운용사항을 월별, 분기별, 연도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금고의 운용사항을 월별, 분기별, 연도별로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1. 금고사무에 대한 감독은 회계과장이 총괄한다.

2. 회계과장은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본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